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6769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6건의 법률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889	송옥주의원	2024.07.17.	2024.08.26.
	2800	이만희의원	2024.08.13.	2024.09.25.
	4151	정희용의원	2024.09.20.	2024.11.12.
	4532	조경태의원	2024.10.04.	2024.12.13.
	8566	김선교의원	2025.02.28.	2025.04.23.
	10007	이만희의원	2025.04.22.	2025.06.23.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04.)에서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하여 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취급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살처분 등 방역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가 수행 중인 전화 예찰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 기준을 합리화 함(안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 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병원체의 분리·이동·분양 신고 및 안전관리 기준·점검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를 구축함(안 제2조제9호,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 다. 살처분 및 사체·오염우려물품을 처리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정의를 마련하고, 등록제도와 정기점검 등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신설함(안 제2조제10호,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등).
- 라.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7항, 제9항 및 제10항 신설).
- 마. 사육제한 명령의 이행이 가축처분의 곤란 등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갈음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을 “리프트계곡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큐열”을 “큐열, 럼피스킨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 “가축폐기물처리업”이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을 명한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는 업무

나.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등[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과 잔존물을 포함한다]을 이동·해체·매몰, 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하는 업무

다. 살처분하여 매몰한 가축의 사체 등을 발굴하여 소멸하는 업무 제5조제7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방역본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⑩ 방역본부장은 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가축 소유자등의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등) ①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가축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6(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제5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의7(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5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의9제2호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7.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8. 영업정지 기간 중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설비·방역시설 및 방역 기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조의9(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제9조제6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3. 가축의 소유자등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상담 업무

제14조의 제목“(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관리)”를“(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분양 및 이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가축, 사료, 동물·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 또는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명칭, 분양·이동 계획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현황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작성·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⑦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 분양받으려는 자 및 이동

하려는 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질병관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오염우려물품”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육제한이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의 사육규모,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5 및 제3호의6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을 한 자

1의4.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3의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이동하거나 분양 받은 자

3의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4.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제58조제3호 중 “제14조제1항,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2099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3호의7부터 제3호의9까지를 각각 제3호의11부터 제3호의13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7부터 제3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7.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8.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한 자

3의9.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10. 제5조의9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9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분양 및 이동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이동하거나 분양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p> <p>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u>리프트계곡열</u>, <u>럼피스킨병</u>,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캐슬병, 고병원성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p> <p>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가. ----- ----- ----- ----- -----<u>리프트계곡열</u>----- ----- ----- ----- ----- ----- ----- ----- ----- -----</p> <p>나. -----</p>

<신 설>

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 “가축폐기물처리업”이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을 명한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는 업무

나.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등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과 잔존물을 포함한다]을 이동·해체·매몰, 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하는 업무

⑨ · ⑩ (생 략)

<신 설>

<신 설>

⑪ · ⑫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제5조의5(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등) ①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가축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6(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제5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 설>

제5조의7(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
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
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
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
하여 휴업한 경우
4. 제5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의9제2호에 따른 점검
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7.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

<신 설>

<신 설>

를 사용하게 한 경우

8. 영업정지 기간 중 가축폐기

물처리업을 한 경우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설비·방역 시설 및 방역기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조의9(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제5조의 3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는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⑤ (생 략)

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3의2. (생 략)

<신 설>

4. ~ 6. (생 략)

⑦ ~ ⑪ (생 략)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 및 보존·관리) ①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
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
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
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을 연구·검사하
는 기관의 장은 제1종 가축전
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지 여부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가축의 소유자등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
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상담 업무

4. ~ 6. (현행과 같음)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4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분양 및 이동 등) ① 가
축, 사료, 동물·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가축전
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병
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지체 없이 국
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②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 또는 이동하
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가축
전염병 병원체의 명칭, 분양·
이동 계획 등을 국립가축방역

③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 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현황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작성·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 분양받으려는 자 및 이동하려는 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신 설>

<신 설>

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질병관리청장은 제7항에 해
당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
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14조의2(고위험가축전염병 병
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
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
하려는 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고위
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준
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
 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
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
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
 · 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
 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
 는 조치

2. ~ 6. (생 략)

② ~ ⑨ (생 략)

<신 설>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과징금 처분) ① 시장

· 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소유
자등에게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육제한이 가축
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에 같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의 사육규모,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의2. (생략)

<신설>

<신설>

2. 3. (생략)

<신설>

<신설>

러하여야 한다.

⑥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벌칙)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영업을 한 자

1의4.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2.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이동하거나 분양받은 자

3의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2. 3의3. (생 략)

4. ~ 9. (생 략)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 략)

3.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5. (생 략)

법률 제2099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제1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우선 적용한다.

1. ~ 3의6. (생 략)

<신 설>

3의4.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3의5. 3의6. (현행 제3호의2 및 제3호의3과 같음)

4. ~ 9.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1항-----

4. 5.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99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의6. (현행과 같음)

3의7.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신 설>

<신 설>

3의7. ~ 3의9. (생 략)

4. ~ 6.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신 설>

3. ~ 13. (생 략)

④ (생 략)

3의8.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한 자

3의9.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10. 제5조의9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3의11. ~ 3의13. (현행 제3호의7부터 제3호의9까지와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 1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